

마음이 모여 마을이 됩니다!

성북구



수신자 내부결재
(경유)

제목 **길음3축진구역 주택재건축 사업시행변경인가 처리(2차)**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357(2006.10.19)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촉진계획결정되고, 서고시제2009-111호(2009.3.19.), 서고시제2011-143(2011.6.02.)호, 서고시 제2012-307호(2012.1.15.)로 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되어 2009.11.27. 조합설립인가 및 성북구 고시 제2012-89호(2012.6.14.) 사업시행인가, 성북구 고시 제2015-25호(2015.2.23.)로 관리처분인가된 성북구 정릉1동 192번지 일대 길음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,

2. 사업시행자로부터 지난 2015.11.30.자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서가 관계법령 및 제출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므로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8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변경인가 처리하고 이를 고시하고자 합니다.

가. 사업명 : 길음3축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

나. 대지위치 : 성북구 정릉1동 192번지 일대(19,488.00㎡)

다. 사업시행자 : 길음3축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오경석

라. 건축규모 : 지하4/지상25층 5개동 공동주택 39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

마. 주요변경내역

- 2015.2.23. 관리처분시 정비사업비 추산액 반영한 자금계획 변경
- 평형별 단위세대 평면개선 및 공급면적 변경 등 건축계획 변경
- 주택규모별 공급세대수 변경 등

붙임 : 1. 검토보고서 1부.

2. 고시문(안) 1부.

3. 변경인가서 및 인가조건 2부.

4. 관계법령 검토서 2부,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1부. 끝.

